

미국 법무부

언어 접근 계획

2023년 8월 15일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목차

일반 언어 접근 정책.....	1
1. 정책 선언문.....	1
2. 목적.....	2
3. 권한.....	2
4. 정책의 범위.....	4
5. 정의.....	5
6. 역할 및 책임.....	5
7. 피드백 또는 불만 접수 구조.....	5
8. 언어 접근 계획 검토 및 업데이트.....	5
언어 접근 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	6
1.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이 있는 지역사회의 식별 및 법무부와의 소통.....	7
2.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을 가진 개인의 신원 및 해당 개인의 주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법.....	8
3. 품질 보증 및 관리.....	9
4.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아웃리치 및 참여.....	11
5. 조달.....	13
6. 자원 할당.....	13
7.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	13
8.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15
9. 다국어 및 접근성 높은 디지털 콘텐츠.....	18
10. 직원 교육.....	19
11. 채용 관행 및 다국어 직원에 대한 접근성.....	20
12. 부서 및 기관 간 협력.....	22
13. 성과 측정 및 평가.....	22
부록 A: 용어 정의.....	24
부록 B: 역할과 책임.....	28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일반 언어 접근 정책

1. 정책 성명

- a. 대중과의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소통은 법치를 수호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며, 민권을 보호하는 법무부(DOJ 또는 법무부)의 임무에 필수적입니다. 법무부는 행정명령 13166,¹ 13985,² 14031,³ 및 14091⁴에 따라 법무부 혜택,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통해 제한된 영어 능력(LEP)을 가진 역사적으로 서비스에 취약한 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b. 법무부 사무소, 국, 부서(구성원) 및 직원들은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을 위해 법무부 및 법무부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⁵을 받는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접근을 적시에⁶ 제공하기 위해 계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c. 이 정책은 모든 법무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고 전화, 서면, 대면 또는 전자적 방법⁷을 통해 법무부와 소통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이 아닌 법무부의 책임임을 반영합니다.
- d.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의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에게 법무부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 직원은 이러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품질 보증 및 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침 3을 참조하세요.
- e. 해당되는 경우, 법무부 직원은 해당 부서의 사명과 운영에 비추어 대중에게 언어 접근성 프로그램 및 활동의 가용성을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효과적으로 알리고,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에게 무료로 자격을 갖춘 언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 법무부와 그 구성요소들은 법무부가 청각장애 또는 난청(D/HOH), 시각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개인과의 의사소통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1973년 재활법 504조⁸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또는 난청을 가진 많은 개인들이 영어와는 별개의 언어인 미국 수어(ASL)⁹를 사용하며 기타 개인들은 다른 유형의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 언어 접근 계획은 청각장애 또는 난청을 가진 개인들을 위한 언어 접근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은 1973년 재활법 501조¹⁰ 및 504조의 요건에 일치하는 미국 수어, 기타 수어 통역, 또는 기타 보조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청각장애 또는 난청을 가진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목적

이 언어 접근 계획(LAP 또는 계획)의 목적은 법무부 구성원과 직원이 법무부 혜택, 서비스, 정보 및 기타 중요한 측면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법무부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권한

행정명령 13166호에 따라 각 연방 기관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기관의 기본 임무에 부합하고 과도한 부담 없이 해당 서비스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및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기관은 "연방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기관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관이 취할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경우, 행정명령 제 13166호에 따라 해당 기관은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신청자 및 수혜자에게 의미 있는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후자의 조항은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가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 6조의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이 언어 접근 계획은 법무부의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언어 접근 법적 요건의 이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언어 접근 제공에 관한 법무부 내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일반 언어 접근 지침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본 계획은 다음에 따라 지침과 기준을 수립합니다:

법령:

- a. 1964 년 민권법 601 조(42 U.S.C. § 2000d) (6 편).¹¹
- b. 1973 년 재활법 501, 504, 508 조.¹²

행정 명령:

- a. 행정명령 13166, *제한적인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65 공보 159, 50121 (2000 년 8 월 16 일).¹³
- b. 행정 명령 13985,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증진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86 공보 14, 7009 (2021 년 1 월 20 일).¹⁴
- c. 행정 명령 14031,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형평성, 정의 및 기회 증진*, 86 공보 105, 29675 (2021 년 6 월 3 일).¹⁵
- d. 행정 명령 14091,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증진*, 88 공보 35, 10825 (2023 년 2 월 16 일).¹⁶

법무부 장관 지침 및 정책:

- a. *행정명령 13166 에 따른 언어 접근 의무에 관한 미국 법무부 장관의 부서장들에게 보내는 각서*(2010 년 6 월 28 일).¹⁷
- b. *행정명령 13166 에 따른 언어 접근 의무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갱신된 약속에 관한 미국 법무장관의 연방 기관장들, 법률 고문 및 민권 책임자들에게 보내는 각서*(2011.2.17.).¹⁸
- c. *중요 범죄 및 중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개선에 관한 미국 법무부 직원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각서*(2021 년 5 월 27 일).¹⁹

- d. 언어 접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약속 강화에 관한 연방 기관장들, 민권 사무소장들 및 법률고문들을 위한 미국 법무부 장관의 각서(2022년 11월 21일).²⁰
- e. 법무부 전략 계획(2022).²¹
- f. 법무부 형평성 실행 계획(2022).²²

기타 관련 법무부 지침: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에 설명된 것 같이 연방 기관의 행정 명령 13166 이행과 1964년 민권법 제 6장(Title VI)의 연방 기금 수령자에 대한 적용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a. 법무부의 초기 제한된 영어 능력 지침, 1964년 민권법 제 6장 시행 – 제한된 영어 능력 보유자에 대한 출신 국가 차별, 65 공보 50, 123 (2000년 8월 16일).²³
- b. 제 6장 제한된 영어 능력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적 차별 금지에 관한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에 대한 법무부의 후기 제한된 영어 능력 지침, 67 공보 41,455 (2002년 6월 18일).²⁴

4. 정책 범위

이 계획은 법무부가 관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연방정부 수행 및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법무부 차원의 언어 접근 정책, 표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각 구성요소별 LAP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 구성요소 및 직원을 위한 지침을 제시합니다.²⁵ 이 문서는 구성요소별 LAP를 준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구성요소에 대한 기본 언어 접근 정책으로 사용됩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지침은 미 법무부의 언어 접근 프로그램의 내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당사자가 미국, 그 기관, 그 임원 또는 직원 또는 개인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는 미 법무부의 언어 접근 프로그램의 내부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인용할 의도가 없습니다. 본 문서에서 논의된 프로그램의 관리는 법무부와 그 구성요소의 단독 재량에 따릅니다.

5. 용어 정의

본 계획에 사용된 주요 용어는 부록 A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6. 역할 및 책임

이 계획은 법무부의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언어 접근 실무 그룹(DOJ LAWG), 부서들 및 부서 담당자가 수행합니다. 이들의 해당 역할과 책임은 부록 B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피드백 또는 불만 접수 구조

본 언어 접근 계획에 대한 의견, 피드백, 질문 또는 불만 사항은 atj_languageaccess@usdoj.gov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 언어 접근 계획 검토 및 업데이트

부서들은 본 법무부 LAP에 따라 부서에 특화된 언어 접근 계획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며, 본 LAP 발행 후 180일 이내에 법무부 LAC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본 LAP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각 컴포넌트는 해당 웹페이지에 컴포넌트별 언어 접근 계획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부서에 특화된 LAP뿐만 아니라 이 LAP는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법무부 LAWG, 민권 부서 및 이해관계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최소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언어 접근 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매일 법무부와 대중 사이의 접촉에는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난청인 개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직원은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및 수사에서 증인, 피해자, 피고를 면담하고, 교도소 고충 처리 절차, 상담, 의료 서비스, 종교 및 기타 편의 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재소자와 소통하며, 이민 청문회 및 기타 이민 절차를 개최하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서신을 작성하고, 대중을 위한 핫라인 유지 및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며,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웹 페이지 호스팅하고, 수감자를 시설과 법원 간에 이송하고, 파산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신용 상담 및 채무자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등 채무자와 소통을 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인신매매, 경찰 위법 행위, 약탈적 텔레마케팅 및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 관련 활동과 관련된 아웃리치 수행 및 문서를 작성합니다.

구성요소들의 사명, 운영, 대중과의 상호작용 수준을 염두에 두고 구성요소들은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난청인 개인의 요구 사항을 조기에 고려해야 합니다. 대중과의 주목할 만한 상호 작용이 있는 구성요소들은 구성요소에 특화된 언어 접근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13 가지 주제는 언어 접근 프로그램 계획의 필수 요소입니다. 각 주제는 각 구성요소의 특성과 운영에 비추어 구성요소에 특화된 언어 접근성 계획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구성요소에 특화된 언어 접근 계획을 준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구성요소들은 아래에 설명된 정책과 원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1.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이 있는 지역사회의 식별 및 법무부와의 상호 작용
2.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난청이 있는 개인 및 그들의 주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법 식별
3. 질 보증 및 관리
4.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아웃리치 및 참여

5. 조달
6. 자원 할당
7.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알림
8.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9. 다국어 및 접근성 높은 디지털 콘텐츠
10. 직원 교육
11. 채용 관행 및 다국어 직원에 대한 접근성
12. 부서 및 기관 간 협력
13. 성과 측정 및 평가

1.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이 있는 지역사회 식별 및 법무부와의 상호작용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 장애/난청이 있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²⁶를 파악하고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 장애/난청이 있는 개인들이 있는 지역사회가 구성요소들과 상호 작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지역사회 조사(ACS)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3.6%가 청각장애인/난청인으로 추정됩니다.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간의 정의 불일치,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제한, 지속적인 과소 보고로 인해 청각장애/난청 지역사회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²⁷

또한, ACS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상위 5개 언어는 스페인어, 중국어(북경어 및 광둥어 구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문자 포함), 베트남어, 한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어 포함)입니다.²⁸ 구성요소 직원들은 다음 도구 및 자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목표, 선거구 및/또는 지리적 지역에 따라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식별해야 합니다:

- 언어 맵 및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있는 지역사회들의 언어 맵 및 데이터
 - LEP.gov/Maps²⁹ 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미국 내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 인구의 수와 집중도별 전국, 주 및 사법구 지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에 사용된 인구조사 언어 범주는 제한적이며, 보급률이 낮은 언어, 일부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및 기타 원주민 언어 및/또는 언어 변종을 사용하는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또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연방, 주, 지방 정부 기관, 학교, 지역사회, 종교 기반 단체의 데이터도 인구조사 데이터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사회 또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세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 데이터 또는 세분화된 데이터 포함).
- 아래 섹션 4 에 설명된 대로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 및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상담합니다.
- 법무부 언어 접근 자가 평가 도구,³⁰ 이 도구는 구성요소들이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과의 다양한 상호 작용 지점,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기록,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은 법무부 사법 관리국,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민권국, 사법 접근 사무국(ATJ)에 도움을 요청하여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있는 지역사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난청이 있는 개인 식별 및 해당 개인의 주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법

구성요소 직원들은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난청이 있는 개인과 처음 접촉하는 시점에 언어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초기 평가를

수행하거나 준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성요소 직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어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동반자의 자발적인 자기 식별.
-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힌 경우 해당 개인의 주 언어에 대한 확인 문의.
- 개인의 주 언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 또는 자격을 갖춘 통역사가 참여.
- "I Speak" 언어 식별 카드 또는 포스터 사용.³¹

개인의 주 언어 또는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할 때는 다른 요인들 중에 특히 논의되는 상황이나 주제와 관련된 잠재적 민감성이나 트라우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 의사소통 방법(예: 구두/수어 대 서면)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요소 직원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근거로 또는 청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주 언어에 대해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를 식별할 때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언어 식별을 위해 개인에게 출신 지역, 지자체, 마을 또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해 질문;³² 및
- 청각장애인/난청인은 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영어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식. 이들은 다른 지역 또는 국가의 수어 지원, 보조기구 조달 및/또는 청각장애인 또는 공인 청각장애인 통역사(CDI)의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품질 보증 및 관리

구성요소들은 번역사, 통역사 또는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난청을 가진 개인들과 "그들의 언어" (in-language)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다국어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이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법무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³³

청각장애/난청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품질 보증에 관한 지침은 *ADA 요건을 참조하세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ADA Requirements: Effective Communication]* (English), <https://www.ada.gov/resources/effective-communication/#crt-page--sidenav>.

자격이 없는 개인을 고용하면 기밀이 침해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부정확하고 공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역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법무부 직원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개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어린이 포함)
- 이웃
- 친구
- 지인 또는 방관자
- 상대방 관련인
- 불리한 목격자 또는 피해자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의 역량에 대한 고려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어와 다른 언어 모두에 능숙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절한 통역 모드(예: 순차, 동시 또는 시역 통역)를 사용합니다.
-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 또는 번역하고 구성요소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미를 표현합니다.
- 부서 및 기타 해당 기밀성, 공정성 및 윤리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법무부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 통역사, 번역사 또는 다국어 직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유지하는 능력과 전문 표준을 준수하는 능력.
- 기계 번역의 적절한 검토 및 사용을 포함하여 언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최신 기술의 적절한 사용법을 이해합니다.

청각 장애/난청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수어 통역사, 청각장애인 통역사 또는 공인 청각장애인 통역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통역의 경우, 구성요소들은 통역사의 잠재적 피로와 이러한 피로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구성요소들은 가능한 경우 통역사를 자주 쉬게 하거나 여러 명의 통역사를 사용하는 등 장시간 진행 시 통역사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 직원은 지역사회 기반 단체나 기타 자원봉사자에게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확하고 공정하며 기밀이 유지되는 통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격, 전문적 책임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조직의 직원과 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정부 윤리 규정에 따라 선물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³⁴ 구성요소들은 자원봉사자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례별로 윤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4.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들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아웃리치 및 참여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 청각장애인/난청인 지역사회 및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의 효과적인 홍보 및 참여는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구성요소들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무부 및 구성요소들의 언어 접근 계획 또는 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한 언어 접근 계획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³⁵

각 구성요소의 고유한 임무와 운영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단체, 그리고 전통적으로 언어 때문에 소외되어 온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 지역사회와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에게 법무부 구성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알리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합니다.
- 언어 지원 서비스의 성격, 범위, 이용 가능 여부 및 요청 방법에 대해 서면, 영상 및/또는 음성 수단을 통해 명확하게 소통합니다.³⁶
- 이러한 지역의 우려 사항, 요구 사항 및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 상담, 포커스 그룹 및/또는 경청 세션 등에 이러한 지역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아웃리치 이벤트가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고,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이 자신의 주 언어로 참여하고, 정보를 받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이벤트에서 청각장애인/난청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법무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해 비영어권 언론사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 비영어권 언어로 된 구성요소들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배포합니다.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이 포함될 수 있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구성요소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연락하고 협력합니다.
- 구성요소들의 언어 지원 서비스의 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을 구축합니다.

5. 조달

언어 지원 서비스를 조달하고자 하는 구성요소들은 공급업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작성할 때 계약 책임자, 계약 책임자 담당자, 예산 및/또는 조달 사무소, 필요한 경우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소들은 법무부 관리 부서와 상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기관 계약 수단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위해 법무부 전체에서 자원 공유 및 비용 절감 계획을 추구하도록 장려됩니다.³⁷ 구성요소들은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와 상담하여 자원 공유 가능성을 파악하고 현재 이용 가능한 법무부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조달하기로 선택한 경우, 구성요소의 조달 사무소는 제안 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품질 관리 및 보증 절차를 포함하고, 책임을 할당하며, 분쟁 해결 조항을 포함하도록 구성요소의 요구 사항과 공급업체의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 구매 시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어 서비스 조달 위원회의 외국어 서비스 주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³⁸

6. 자원 할당

구성요소는 해당 구성요소가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과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상호작용의 범위에 따라 언어 접근 계획, 아웃리치 및 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고려해야 합니다.³⁹ 의회 세출 및 자원 가용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구성요소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의 예상 확장을 포함하여 구성요소들이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과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향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통 수준에 비례하여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7.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통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거나 언어 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은

구성요소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많은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은 구성요소의 혜택, 프로그램, 정보 및 서비스를 찾지 않을 수 있으며, 혜택에 대한 자격 또는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 또는 정보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만 사항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구성요소는 구성요소의 사명과 운영에 비추어 해당되는 경우,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프로그램, 아웃리치, 홍보 담당자 및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매체(예: 간판, 인쇄 및 전자 자료, 중요한 문서의 서신 또는 우편 발송, 소셜 미디어, 라디오 등)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목표, 구성요소 선거구 및/또는 지역에 따라 적어도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에는 다국어 태그 라인을 포함하여 상위 식별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개인이 언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제공된 중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요소들이 다국어 태그 라인을 포함하도록 장려됩니다.⁴⁰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문자가 없는 구두 언어이거나 서비스를 받는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의 문해력이 낮은 경우, 구성요소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를 비디오 또는 오디오로 녹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는 청각장애인/난청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⁴¹ 이 통지는 번역된 웹사이트 문서, QR 코드, 통역사가 매개하는 이해관계자 지원활동 등 기존 도구 및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⁴²

구성요소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연락처를 공지에 포함할 것이 장려됩니다. 이 연락처는 사무실, 담당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은 구성요소별 언어 접근 계획 및 정책을 해당 구성요소의 웹 페이지에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할 것이 장려됩니다. 마찬가지로, 법무부 언어 접근 계획의 다국어 및 이용 가능한 사본은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8.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언어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은 구성요소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는 해당 구성요소의 필요에 부응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에게 맞춤형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⁴³ 적절한 경우, 구성요서들은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성요소 직원들이 언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직접 언어 서비스, 통역, 번역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직접 언어 서비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국어 능력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직원에게 해당 언어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⁴⁴ 자격이 없는 직원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해 상충 또는 기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법무부 및/또는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에게 기타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 통역

구성원의 임무와 운영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들은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대면, 전화 또는 화상 원격 기술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⁴⁵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구성요소 직원들은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법무부의 정책을 반복해서 설명할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거부는 문서화해야 합니다.

통역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요청할 때, 구성요소 직원들은 제공되는 통역사가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가 사용하는 언어 및/또는 언어 변형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성요소들은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청각장애인 통역사, 공인 청각장애인 통역사(CDI), 커뮤니케이션 접근 실시간 번역(CART) 또는 개인이 요청한 기타 보조 지원 또는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⁴⁶

법무부는 여러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c. 번역

법무부는 중요한 문서의 번역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문서를 "중요 문서"로 분류하는 것은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 만남 또는 서비스의 중요성, 그리고 해당 정보가 정확하게 혹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에게 미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⁴⁷ 구성요소들은 어떤 문서를 "중요한" 문서로 간주할지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일반 대중 또는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 (2) 개인과 법무부 간의 사건 또는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인 문서가 그것입니다.

일반 대중 또는 광범위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⁴⁸

- 공공 지원 또는 교육 자료.
- 지침을 포함한 청구 또는 신청 양식.
-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양식 또는 서면 자료.
- 지원 또는 지역사회 회의 또는 교육에 대한 공지.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가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또는 사안을 알리는 보도 자료.

- 구성요소의 사명과 운영에 비추어 해당되는 경우, 구성요소가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에 관한 통지.
- 특정 동의 명령, 법령, 합의각서 또는 기타 유형의 변론서 또는 소송 자료.

구성요소들은 필요에 따라 일반 대중을 위한 중요한 문서를 주요 언어로 번역하고 프로그램 목표, 선거구 및/또는 지역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⁴⁹

개인과 법무부 간의 사건 또는 사안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사례 관련 지역사회 지원 통지.
- 행정적 불만, 해제 또는 면제 양식.
- 판결 서신.
- 공소시효, 다른 연방 기관에 대한 의뢰,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한 조사 거부 결정, 조사, 사건 또는 사안의 종결에 관한 서신 또는 통지.
- 혜택 또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 거부, 상실 또는 감소, 가석방 및 기타 청문회에 대한 서면 통지.

대부분의 경우 법원, 변호사, 법정 옹호자, 건축가, 경찰 또는 기타 전문가에게 주로 전달되는 자료는 이러한 목적에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소송 또는 형사 고발과 관련된 법원 제출 서류 포함). 핵심 소송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 구성요소 또는 하위 구성요소도 관련 연방 현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은 번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이러한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 계획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대체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각 구성요소들은 중요한 문서를 식별하고 번역할 언어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국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 문서의 경우, 구성요소들은 우선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중요 정보를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⁵⁰ 구성요소들은 언어 접근 계획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러한 기준을 재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성요소들은 모든 번역이 자격을 갖춘 번역가에 의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⁵¹ 구성요소들은 사람의 검토 및 품질 관리 없이 기계 번역만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전달되는 정보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에 중요한 정보이거나 정확성이 필수적인 경우, 원본 자료에 비문자 언어(속어나 은유 등)가 사용되거나 문법이나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축약어나 두문자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복잡하고 기술적이거나 장황한 경우 기계 번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⁵²

법무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은 출신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문자를 읽을 수 없거나 해당 언어에 문자가 없어 번역된 자료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의 경우, 구성요소들은 시역, 통역 또는 오디오/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의 경우, 구성요소들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⁵³

중요한 문서를 번역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구성요소들은 번역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다국어 및 접근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구성요소들은 구성요소에서 제작한 공개 웹사이트의 다국어 및 접근 가능한 콘텐츠,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 문서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가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구성요소의 관할권 및 임무.
- 범죄 행위 또는 법률 위반을 신고하거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실종자를 신고 및 식별하기 위해 법무부 또는 구성요소와 연락하는 방법을 포함한 연락처 정보.

- 불만 접수 방법(양식 및 양식 작성 지침 포함).⁵⁴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가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 자료 및 중요 공지사항.
- 개인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교육 자료.

구성요소들은 내부 웹 콘텐츠 직원 및 최고 정보 책임자실(OCIO)과 협력하여 번역된 디지털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를 위한 의미 있는 접근을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⁵⁵

또한 법무부와 그 구성요소들은 연방 기관이 웹사이트, 전자 문서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자 및 정보 기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1973년 재활법 508조(5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성요소들은 번역된 디지털 콘텐츠가 508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고 정보 책임자실과 협력해야 합니다.

10. 직원 교육

법무부 직원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이라면 구성요소들은 신규 및 기존 구성요소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언어 접근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요소들은 모든 직원의 전문성 개발 요구 사항을 평가할 때 언어 접근 교육 필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성요소의 임무와 운영에 비추어 해당되는 경우, 다음에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 특정 언어가 필요한 개인들의 식별.
-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 이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 식별.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를 위한 언어 접근 법적 요건.
-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법적 요건.
- 언어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과 시기를 포함한 법무부 및 구성요소 언어 접근 정책 및 계획.

-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 사내 통역사 및 번역사 또는 계약직 직원을 통해 언어 지원 서비스의 접근과 제공.
- 일반 언어 사용.⁵⁶
- 대면, 전화 또는 화상 원격 플랫폼을 통해 통역사와 작업하기 위한 모범 사례.
- 번역가와 함께 작업하기 위한 모범 사례.
- 통역사 윤리.
- 문화적 역량.
- 언어 지원 서비스 사용 추적을 위한 모범 사례.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에게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 사례.
-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모범 사례.

구성요소들은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에게 기술 교육(예: 통역사 윤리, 대화형 온라인 언어 접근 과정 등)을 제공하여 언어 지원 기술을 유지하고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는 타당할 경우, 법무부 LAWG와 협력하여 법무부의 기본 언어 접근 교육⁵⁷을 업데이트하여 구성요소들이 해당 개인과 상호작용하거나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적절히 교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성요소들은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직원과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의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량 및 빈도를 평가해야 합니다.⁵⁸

11. 채용 관행 및 다국어 직원에 대한 접근성

법무부는 직원의 다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에는 직접 언어 소통 및 언어 지원 제공이 직무에 포함되는 직원과 법무부를 대신하여 평가된 언어 능력을 사용하기로 자원한 직원이 포함됩니다.

다국어 직원 채용 또는 활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각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정 직책이나 구성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언어에 대한 비영어권 언어 능력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정도를 평가합니다.⁵⁹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와 상호작용하는 직무의 직무 설명, 공고 및 급여율을 수정하여 구성요소 언어 요구 사항 평가를 기반으로 언어 능력을 직책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1973년 재활법 501조를 준수하고, 이러한 개인들이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등 채용 관행이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적절한 경우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의 언어 능력을 파악, 평가 및 개발합니다.
- 적절한 경우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에게 기술 교육(예: 통역사 윤리, 번역 교육, 통역 교육 등)을 제공하여 언어 지원 기술을 유지하고 개선합니다.

법무부 직원은 일부 경우에 다국어를 구사하는 내부 직원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함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성요소가 구어 지원 서비스 제공이 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및 FBI 언어 시험 및 평가 부서와 협의하여 언어 시험에 대해 논의하고, 언어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구성요소별 자격 요건을 수립해야 합니다.⁶⁰

각 구성요소들은 구사하는 비영어권 언어와 구두 및 서면 숙련도 수준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의 구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다국어 직원 인벤토리를 유지하면 향후 구성원 내 또는 구성원 간의 자원 공유 이니셔티브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업무량과 생산성을 평가할 때 직원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한 시간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법무부와 기관들 간 협력

구성요소들은 자원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연방 용어를 표준화하기 위해 서로 및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유망한 관행을 공유하고 잠재적으로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에게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는 능력을 간소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무부 전체 및 기관들 간 이니셔티브를 모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LAWG는 유용한 자원과 자료를 식별, 개발 및 배포할 것입니다.

13. 성과 측정 및 평가

구성요소들은 언어 접근 계획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업데이트하여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언어 접근 서비스의 범위와 성격이 관련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인구, 구성요소 언어 접근 요구 사항, 기술 변화 및 계획에 따른 구성요소 경험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요소들은 언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장 자주 접하는 언어들의 목록을 작성.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지역사회 회원과의 주요 연락 채널(전화, 대면, 서신, 웹 기반 등)을 파악.
-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가 언어 접근 서비스를 요청, 필요 및/또는 접근한 정도를 파악.
- 계획과 프로토콜을 검토.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의 연간 비용 검토.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컨설팅.⁶¹

구성요소들이 위에서 식별된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구성요소 직원은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언어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요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찾고 받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의 주요 언어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성요소들은 이러한 기준을 개발할 때 기술 지원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및 ATJ에 문의해야 합니다.⁶²

부록 A: 용어 정의

법무부는 본 계획의 목적을 위해 아래에 정의된 대로 다음 용어를 사용합니다:

- a. **공인 청각장애인 통역사(CDI)**.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청각장애인/난청인)으로서 수어 통역사 등록소에서 통역사로 인증받은 개인.⁶³
- b. **의사소통 접근 실시간 번역(CART)**. 속기 기계, 노트북 컴퓨터 및 실시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어를 영어 텍스트로 즉시 번역하는 서비스입니다. CART 서비스로 생성된 텍스트는 개인의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하거나,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과 결합하여 캡션으로 표시하거나, 기타 전송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 **청각장애인/청각장애(D/d)**. 대문자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이면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특정 집단을 의미하며, 소문자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는 청각학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청각장애 또는 난청(D/HOH)인 개인은 영어 구어 또는 문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어 또는 기타 공인된 수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d. **수어통역사**. 문화적, 언어적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청각장애인 통역사는 청각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청각-장애, 난청 또는 후천적 청각장애가 있는 개인이 사용하는 수어(또는 서면 언어) 및 기타 시각적, 촉각적 의사소통 형식으로 통역, 번역 및 음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⁶⁴
- e. **직접 "해당 언어" 의사소통**. 다국어룰 구사하는 직원과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간의 영어 이외의 언어로 단일 언어 의사소통(예: 한국어와 한국어).
- f.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소통 장애의 경우, 청각장애인과 같은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 도구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⁶⁵
- g. **형평성**. 흑인, 라틴계, 원주민 및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주민 및 기타 유색인종, 종교적 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퀴어(LGBTQ+), 장애인, 농촌 지역 거주자, 기타 지속적인 빈곤이나 불평등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사람 등 소외된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⁶⁶

- h. **난청(HOH)**.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는 청력 손실을 경험하는 사람. 청각장애 또는 난청(D/HOH)은 영어 구어 또는 문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어 또는 기타 공인된 수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i. **통역**. 한 언어(원어)로 된 말을 듣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처리한 다음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음성 언어(목표 언어)로 충실하게 구두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의 경우, 여기에는 원어로 된 음성 또는 서명 커뮤니케이션을 이해, 분석 및 처리한 후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해당 정보를 음성 또는 서명 대상 언어로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j. **제한된 영어실력 (LEP)**. 다음과 같은 개인들을 뜻합니다:

- a.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 b. 제한된 영어로 읽기, 쓰기, 말하기 또는 이해 능력을 가짐. ⁶⁷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은 특정 유형의 의사소통(예: 말하기 또는 이해)에는 능숙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예: 읽기 또는 쓰기)에서는 영어 실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한적 영어실력 지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환경(예: 동료와 영어로 대화하기)에서는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른 환경(예: 법정 소송에서 발표하기)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난청인들은 영어 구어 또는 문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이며 수어 또는 기타 공인된 수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k. **언어 지원 서비스**. 구두 및 서면 언어 서비스는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활동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과 완전한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 l. **의미 있는 접근**. 언어 지원이 필요한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에게 무료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 지원. 의미 있는 접근이란 영어에 능숙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제한되거나 지연되거나 열등하지 않은 접근을 의미합니다.

- m. **의사소통 방법.** 청각 장애 혹은 난청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일부는 수어 통역사나 보조 청취 장치에 의존하고, 일부는 주로 서면 메시지에 의존합니다. 많은 청각장애/난청인들은 듣지 못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 n. **기본 언어.** 수어 또는 촉각 수어를 포함하여 개인이 법무부와 상호작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언어입니다. 개인의 기본 언어는 언어 변형일 수 있습니다.
- o. **프로그램 또는 활동.**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라는 용어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법무부의 모든 운영을 의미합니다.⁶⁸
- p. **자격을 갖춘 다국어 구사 직원.** 영어에 능숙하고 구성요소에서 요구하는 숙련도 수준과 검증된 언어 시험을 통해 입증된 대로 하나 이상의 다른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입니다.
- q. **자격을 갖춘 번역사.** 국가 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통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번역 능력을 입증한 사내 또는 계약 번역사로서 법무부와 계약 또는 구성원의 승인을 통해 번역 권한을 부여받은 번역사입니다. 자격을 갖춘 번역사는 또한 전문 표준에 대한 지식과 해당 전문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필수 법무부 용어를 숙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r. **자격을 갖춘 통역사.** 법원 인증, 국무부 또는 이와 유사한 시험을 통해 통역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았거나 통역 능력을 입증한 사내 또는 계약 통역사로, 법무부와 계약 또는 구성원의 승인에 의해 통역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는 전문 표준에 대한 지식과 해당 전문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필수 법무부 용어를 숙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s. **품질 보증.** 언어 지원 서비스의 정확성, 일관성,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t. **수어.** 손동작, 제스처, 얼굴 표정으로 문법 구조와 의미를 전달하는 청각장애/난청인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보편적인 수어는 없습니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어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수어(BSL)는 ASL과는 다른 언어이며, 수어를 아는 미국인은 영국 수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u. **시역.** 통역사가 원본 텍스트 또는 문서를 시각적으로 검토한 후 의미의 변화 없이 텍스트를 구어 또는 수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 v. **태그 라인.** 이 계획의 목적상 이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 문서(예: 언어 지원 서비스 통지, 권리 통지, 양식, 서신 등) 또는 전자 매체(예: 웹사이트, 이메일을 통한 통지 등)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고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문서 또는 전자 매체를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여러 비영어권 언어로 된 짧은 통지를 의미합니다.⁶⁹
- w. **번역.** 문화와 방언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텍스트의 스타일, 어조 및 의도를 유지하면서 원본 언어의 텍스트를 가능한 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대상 언어의 동등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절차입니다.⁷⁰
- x. **중요 문서.** 구성요소의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종이 또는 전자 문서 자료입니다.

부록 B: 역할과 책임

a.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2021 년에 수립된 법무부 직원들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 대응 노력 개선에 관한 각서(2021 년 5 월 27 일)⁷¹에 명시된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는 법무부 법무 접근성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 i. 언어 접근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계획을 개발합니다.
- ii. 법무부 내 언어 접근과 관련된 정책 및 모범 사례의 통일성을 개발, 주도 및 홍보합니다.⁷²
- iii. EO 13166, 법무부의 형평성 실행 계획, EO 13985 및 언어 접근에 관한 기타 관련 기관 전반의 의무를 범법무부적으로 일관되게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iv. 대중과 소통하는 구성요소들의 대표와 함께 언어 접근성에 관한 기관 내 실무 그룹인 법무부 언어 접근성 실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v. 법무부 언어 접근 계획의 구현 및 정기 검토를 주도하고 구성요소들의 언어 접근 계획의 구현 및 검토를 지원합니다.
- vi. 관련 내부 자원이 포함된 법무부 원스톱샵의 생성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하여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한 구성요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내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간소화하고 이를 확장 및 중앙 집중화하는 작업을 감독합니다.⁷³
- vii. 법무부 전체에서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부 지침, 자원 및 자료를 개발하고 홍보합니다.
- viii. 법무부 구성요소들의 지속적인 언어 접근 요구 사항에 대해 적절한 경우 지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ix.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을 참여시키고, 이들과 협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통합합니다.

- x. 언어 접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무부 민권국 및 기타 연방 기관과 협력합니다.
- xi.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범법무부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의 법무부 및 기타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b. 법무부 언어 접근 실무 그룹

2010 년에 설립되어 2022 년에 복원된 법무부 언어 접근성 실무 그룹(DOJ LAWG)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언어 접근성 코디네이터가 의장을 맡고 대중과 소통하는 법무부 구성요소들의 대표로 구성됩니다. 법무부 언어 접근성 실무 그룹은 매월 회의를 개최합니다:

- i. 구성요소들이 EO 13166 을 완전히 준수하고 법무부 형평성 실행 계획에 따른 법무부의 언어 접근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합니다.
- ii. 언어 접근 법적 요건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 iii. 구성요소들과 직원들이 언어 접근 계획, 정책 및 관행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iv. 번역, 통역, 교육, 기술 사용 및 기타 중요한 언어 접근 문제를 다루는 언어 접근 모범 사례와 자원을 파악하고 공유하여 직원이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와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v.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조치를 수립합니다.⁷⁴

c. 법무부 구성요소들

위의 요건과 의무에 따라, 그리고 각 구성원의 고유한 임무와 운영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 대민 활동을 하는 법무부 구성요소들은 다음을 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i. EO 13166 및 기타 법무부 언어 접근 의무를 준수.⁷⁵
- ii.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1973 년 재활법 501 조, 504 조 및 508 조를 준수.⁷⁶

- iii. 제한적 영어실력이 있는 개인 또는 청각장애/난청이 있는 개인들을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의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 iv.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계획하고 제공합니다.
- v. 본 법무부 전체 계획에 따라 필요에 따라 구성요소별 언어접근계획을 유지 관리, 검토 및 업데이트합니다.
- vi. 구성요소의 또는 법무부의 언어접근계획에 따라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 vii.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기타 지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한적 영어실력이 있는 개인 및/또는 청각 장애/난청이 있는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언어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해 알립니다.
- viii.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 자금 지원 기회, 규정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해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의 지역사회와 협의합니다.
- ix. 법무부 언어 접근 실무 그룹에서 활동할 최소 한 명의 구성원 대표를 지정합니다.
- x.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구성요소 정책과 프로그램이 언어 접근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d. 법무부 구성요소 직원들

제한적 영어실력을 가진 개인 및 청각장애/난청을 가진 개인과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 직원들은 반드시:

- i. 행정명령 13166, 13985, 본 계획 및 해당 구성요소의 언어 접근 계획을 숙지합니다.
- ii.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의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준을 숙지합니다.⁷⁷
- iii.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에게 법무부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iv. 소속된 구성요소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법무부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가 요청할 때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를 만나거나 만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언어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최고 수준의 전문적 역량과 윤리적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들은 대리인 없는 당사자, 피해자 및 증인을 포함하여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 상호 작용할 때 해당 직업 행동 규칙에 따른 자신의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전문적 책임 자문 사무소는 법무부의 변호사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들

또한 주 및 지방 정부 및 기타 기관에 자금 지원, 현물 지원, 교육, 세부 인력 또는 기타 지원을 통해 연방 지원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들은 그러한 지원의 수혜자가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와 관련된 제 6 편 차별 금지 의무와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재활법 501, 504 및 508 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들은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가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조금 또는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사전 신청 및 홍보 자료를 번역하고 다국어 교육 및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프로그램이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제한적 영어실력 소유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홍보 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당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이 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구성요소들은 차별 금지에 대한 연방 민권 보장 제공, 정기 감사 실시, 불만 기반 조사 실시, 규정 준수 검토 대상자 선정 등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이 제 6 편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권 부서의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섹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 [Improving Access to Services for Person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English)*, Exec. Order No. 13,166, 65 Fed. Reg. 50121 (2000년 8월 16일),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00-08-16/pdf/00-20938.pdf>.
- 2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증진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English)*, Exec. Order No. 13,985, 86 Fed. Reg. 7009 (2021년 1월 20일), <https://www.govinfo.gov/content/pkg/DCPD-202100054/pdf/DCPD-202100054.pdf>.
- 3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형평성, 정의 및 기회 증진 [Advancing Equity, Justice, and Opportunity for Asian Americans, Native Hawaiians, and Pacific Islanders] (English)*. Order No. 14,031, 86 Fed. Reg. 29675 (2021년 6월 3일),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1-06-03/pdf/2021-11792.pdf>.
- 4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및 소외된 지역 사회 지원 증진 [Further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English)* Exec. Order No. 14,091, 88 Fed. Reg. 10825 (2023년 2월 22일),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3-02-22/pdf/2023-03779.pdf>.
- 5 법무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한적 영어능력 지침은 "모든 유형의 수령자가 항상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에 적용할 수 있는 '적시'에 대한 단일 정의는 없지만, 한 가지 명확한 지침은 언어 접근이 문제가 되는 서비스, 혜택 또는 권리의 효과적인 거부 또는 제한적 영어 능력 소유 당사자에게 중요한 권리, 혜택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부담 또는 지연을 피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7 Fed. Reg. 41461 (2002년 6월 18일).
- 6 미국 법무부, 민권국, *제6 편 법률 매뉴얼, "연방 재정 지원이란 무엇인가?" [Title VI Legal Manual, "What is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English) 제5 조, 4-6 쪽(2021), <https://www.justice.gov/media/1121301/dl?inline>.
- 7 법무부는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이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본 언어 접근 계획에 따라 계획, 아웃리치, 이해 관계자 참여, 자금 할당, 서비스 제공, 직원 교육, 조달, 성과 및 평가에서 형평성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정책적 맥락에서 공평한 의사소통 관행에 대한 팁*, Katya Seligman 외(2022), <https://aspe.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25db6496702d8ee5dace292f7d3925f0/Tips-Equitable-Comm-Practices.pdf>.
- 8 1973년 재활법 504 조(504 조)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9 U.S.C. § 794. 고용 차별의 목적에 대해 504 조는 미국 장애인법 제 1 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9 U.S.C. § 794(d). 기타 목적의 경우, 504 조는 미국 장애인법 제 2 편과 동일한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9 미국 청각장애인 협회, *지역사회 및 문화- 자주 묻는 질문 -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또는 "난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Community and Culture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person who is “deaf,” “Deaf,” or “hard of hearing”?] (English), <https://www.nad.org/resources/american-sign-language/community-and-culture-frequently-asked-questions>.

10 1973년 재활법 501 조(501 조)는 연방 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연방 기관이 장애인의 고용, 배치 및 승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9 U.S.C. § 791(2011), <https://www.eeoc.gov/statutes/rehabilitation-act-1973>.

11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영어능력을 가진 개인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로 간주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라우 대 니콜스* (*Lau v. Nichols*, 414 U.S. 563, 569(1974))에서 연방 기금 수혜자가 비영어 사용자 그룹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것은 제 6 편 및 그 시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중국어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이 영어를 사용하는 다수 민족보다 피고의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더 적은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해 보이며, 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모든 징후"라고 설명했습니다. 568 쪽.

12 1973년 재활법 508 조(508 조)에 따라 연방 기관 및 부서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및 일반 대중에게 특정 제한을 전제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29 U.S.C. § 794d. 또한 미국 접근 위원회, *1973년 재활법, 508 조 연방 전자 및 정보 기술*, <https://www.access-board.gov/law/ra.html#section-508-federal-electronic-and-information-technology> 참조.

13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2000년 8월 16일), *상기*, 주 2. 법무부는 행정명령 13166 이 미국 및 그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14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증진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1월 20일, 2021), *상기* 주 3.

15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형평성, 정의 및 기회 증진(2021. 6. 3.), *상기* 4.

16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 증진(2023년 2월 22일), *상기* 주 5.

17 법무부 장관실, *행정명령 13166 에 따른 언어 접근 의무에 관한 부서장에게 보내는 각서* [Memorandum to Heads of Department Components Regarding Language Access Obligations Under Executive Order 13166] (English) (2010. 6. 28.),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t/legacy/2012/05/04/language_access_memo.pdf. 행정명령 13166 의 이행에 관한 자세한 정보, 지침 및 기술 지원은 www.LEP.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법무부, *행정명령 13166 에 따른 언어 접근 의무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갱신된 약속에 관한 연방 기관장, 법률 고문 및 민권 책임자에게 보내는 각서* [Memorandum to Heads of Federal Agencies, General Counsels, and Civil Rights Heads Regarding Federal Government's Renewed Commitment to Language

Access Obligations Under Executive Order 13166] (English) (2011 년 2 월 17 일), <https://www.justice.gov/media/735081/dl?inline>.

¹⁹ 법무부, *중요 범죄 및 중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개선에 관한 법무부 직원을 위한 각서* [Memorandum for Department of Justice Employees on Improving the Department's Efforts to Combat Hate Crimes and Hate Incidents] (English) (2021. 5. 27.), <https://www.justice.gov/media/1143466/dl?inline>.

²⁰ 법무부, *언어 접근성에 대한 연방 정부의 약속 강화에 관한 연방 기관장, 민권 사무소장 및 일반 변호사를 위한 각서* [Memorandum for Heads of Federal Agencies, Heads of Civil Rights Offices and General Counsels Regarding Strengthening the Federal Government's Commitment to Language Access] (English) (2022 년 11 월 21 일), <https://www.justice.gov/media/1260736/dl?inline>.

²¹ 미국 법무부, *2022-2026 회계연도 전략 계획*(2022 년 10 월), <https://www.justice.gov/doj/doj-strategic-plan/doj-strategic-plan-2022-2026>.

²² 미국 법무부, *형평성 실행 계획*(2022), <https://www.justice.gov/equity>.

²³ 미국 법무부, *1964 년 민권법 제6 편 시행 -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 대한 출신 국가 차별* [Enforcement of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English), 65 Fed. Reg. 50,123 (Aug. 16, 2000 년 8 월 16 일), <https://www.justice.gov/crt/fcs/TitleVI>.

²⁴ 미국 법무부, *제한된 영어 능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적 차별 금지에 관한 제6 편에 관한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에 대한 지침* [Guidance to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Recipients Regarding Title VI Prohibition Against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Affecting Limited English Proficient Persons, 65 Fed. Reg. 50,123] (English), 65 Fed. Reg. 50,123 (Aug. 16, 2000 년 8 월 16 일), <https://www.justice.gov/crt/doj-final-lep-guidance-signed-6-12-02>.

²⁵ 연방정부가 수행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법무부 민권국, *행정명령 13166(2019)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Commonly Asked Questions & Answers Regarding Executive Order 13166 (2019)], <https://www.justice.gov/crt/eo-13166> 을 참조하세요. 많은 부서 업무와 기능은 계약직 직원이 수행하며, 따라서 계약직 직원은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은 계약직 직원에게 행정명령 13166 준수를 포함하여 차별 금지 의무를 고지해야 합니다. 구성요소들은 법무부의 언어 접근 정책,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브리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결정할 때 계약자 및 인턴이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²⁶ "상위 언어"는 미국 인구조사에서 언급된 용어로,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구성요소들은 서로 다른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목적과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소 또는 구성요소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상위 언어"를 결정할 때 언어와 언어 수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는 구성원이 상위 언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7 콜로라도 청각 장애인, 난청 및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 *아웃리치 및 상담 서비스 정보 시트 시리즈 청각 장애인, 난청 및 청각시각 장애 인구 통계 가이드 [Outreach and Consultative Services Information Sheet Series Deaf, Hard of Hearing, and DeafBlind Demographics Guide]* (English) (2022년 9월), <https://ccdhhdb.com/wp-content/uploads/2022/09/DHHDB-Demographics.pdf>.

28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가 사용하는 상위 5개 언어에 대한 이 광범위한 목록은 구성요소에 대한 지침이며, 특히 서신을 포함한 개별 특정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가 의미 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요소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B16002 | 가구의 제한된 영어 사용 상태별 세부 가구 언어 [Detailed Household Language by Household Limited English Speaking Status]* (English), (2021), <https://data.census.gov/table?q=B16&d=ACS+1-Year+Estimates+Detailed+Tables&tid=ACSDT1Y2021.B16002>.

29 미국 법무부, 민권 부서,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섹션, *데이터 및 언어 맵 [Data and Language Maps]* (English), <https://www.lep.gov/maps>.

30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과, *연방에서 실시 및 연방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언어 접근성 평가 및 계획 도구 [Language Access Assessment and Planning Tool for Federally Conducted and Federally Assisted Programs]* (English), 8쪽(2011), https://www.lep.gov/sites/lep/files/resources/2011_Language_Access_Assessment_and_Planning_Tool.pdf.

31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과, *번역: 언어 식별 및 아이 스피크 카드 [Translation: Language Identification and I Speak Cards]* (English), <https://www.lep.gov/translation#toc-language-identification-and-i-speak-cards>.

32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온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는 원주민 언어 또는 비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특정 지역, 지방 자치 단체, 마을 또는 지역사회에 문의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 변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구성요소 직원은 해당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조직 및 시민 단체에 문의하여 언어 식별에 대한 지원을 받고 해당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구성요소들은 다음 "아이 스피크" 원주민 언어 식별 자원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시민권 및 시민 자유 사무소, *아이 스피크... 원주민 언어 식별 포스터 [I Speak...Indigenous Language Identification Poster]* (2016) (English),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Habla%20Poster_12-9-16.pdf.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 민권 및 시민 자유 사무소, *원주민 언어 식별 스티커/인서트*(2016),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Indigent%20Languages%20Sticker.pdf> 참조.

33 구성요소들은 직원에게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34 결핍 방지법(31 U.S.C. § 1342)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인명 안전 또는 재산 보호와 관련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정부를 위해 자발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법에서 승인한 것 이상의 개인 서비스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 35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부서, *효과적인 지역사회 아웃리치 수행을 위한 10 가지 팁*(2015), <https://www.justice.gov/archives/crt/fcs/newsletter/Winter-2015/10Tips>.
- 36 여기에는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구성요소의 공공장소에 눈에 잘 띄는 표지판과 요청 시 행사 기간 동안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번역된 홍보 자료(예: 전단지, 등록 양식)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7, [언어 접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공지 \[Notification of the Availability of Language Assistance Services\]](#) 를 참조하세요.
- 37 구성요소들은 해당되는 경우 교육 자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법무부 내에서 구성요소들은 서비스에 대해 상환 가능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관 간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38 언어 서비스 조달 위원회, 제한된 영어 능력에 관한 기관 간 실무 그룹, *외국어 서비스 주문 가이드 [Foreign Language Services Ordering Guide]* (2020 년 7 월), https://www.gsa.gov/cdnstatic/Foreign_Language_Services_%281%29.pdf.
- 39 구성요소들은 언어 접근 서비스 계획 및 계획에 대한 팁과 도구에 대해 법무부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조건은 본 법무부 언어 접근 계획 또는 구성요소별 언어 접근 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 40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과, *번역: 연방 기관 번역 태그 라인*, lep.gov/translation. 이러한 알림 및 기타 디지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최적의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일반 서비스국, *QR 코드 소개*, <https://digital.gov/resources/introduction-to-qr-codes/> 참조.
- 41 많은 청각장애/난청인은 영어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이므로 문서를 수어 동영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 42 구성요소들은 청각장애/난청인이 영어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 43 구성요소들은 구성요소 직원이 구성요소별 정책, 절차 및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웹페이지 또는 인트라넷 사이트를 만들 것을 권장합니다.
- 44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않은 구성요소들은 언어 식별 및 긴급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외국어로 일반적인 인사말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국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5 구성요소 직원 또는 계약업체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통역 모드(연속 통역, 동시 통역 또는 시역)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통역 모드와 사용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컬럼비아 특별구 인권 사무소, *참조 가이드: 통역의 유형 [Reference Guide: Types of Interpretation] (English)* (2016), https://ohr.dc.gov/sites/default/files/dc/sites/ohr/publication/attachments/Ref%20guide_Types%20of%20interpretation.pdf. 구성요소가 전화 통역사와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과, *전화 통역사와의 작업을 위한 팁 [TIPS for Working with Telephone Interpreters]* (2014) (English), https://www.lep.gov/sites/lep/files/media/document/2020-03/TIPS_Telephone_Interpreters_0.pdf 을 참조하세요.

46 미국 보건복지부, *청각 장애/난청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Effective Communication for Persons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English), <https://www.hhs.gov/guidance/document/effective-communication-persons-who-are-deaf-or-hard-hearing>.

47 구성요소는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이하고 간결한 언어는 정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더 쉽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복잡하거나 기술적인 언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고 언어마다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48 중요한 문서는 웹페이지, 소셜 미디어, 앱 또는 텍스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49 가이드라인 1, [LEP 및/또는 D/HOH 가 있는 지역사회의 식별 및 법무부와의 상호작용을 참조하세요.](#) *[Identification of Communities with LEP and/or who are D/HOH and their Interaction with DOJ]* (English).

50 *Id.*

51 가이드라인 3, [품질 보증 및 관리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English)를 참조하세요.

52 미국 연방 서비스국, *번역 기술 소개: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다국어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과 이유 [Introduction to translation technology: How and why to use translation technology to create multilingual content]* (English) (2023 년 5 월), <https://digital.gov/resources/introduction-to-translation-technology/>.

53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수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난청인은 문자로 된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인정된 수어(예: 일본 수어 또는 멕시코 수어)를 사용하지만 출신 국가의 지배적인 언어(예: 일본어 또는 스페인어)를 문자로 읽을 수 없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4 예를 들어, 민권 부서는 <https://civilrights.justice.gov/report/>에서 다국어 불만 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5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또한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가 법무부 웹 콘텐츠에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국어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영어 능력이 제한된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Strengthening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consumer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English) (2023), <https://www.consumerfinance.gov/about-us/blog/strengthening-information-accessibility-for-consumers-limited-english-proficiency/>. 다국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추가 자료는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과,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사람들을 위한 공공 웹사이트 및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2021),

[https://www.lep.gov/sites/lep/files/media/document/2021-](https://www.lep.gov/sites/lep/files/media/document/2021-12/2021_12_07_Website_Language_Access_Guide_508.pdf)

[12/2021_12_07_Website_Language_Access_Guide_508.pdf](https://www.lep.gov/sites/lep/files/media/document/2021-12/2021_12_07_Website_Language_Access_Guide_508.pdf); 미국 일반 서비스국, *언어 연결(Language Connections)*을 참조하세요: *비영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지 관리 및 제공을 위한 팁*(2022),

<https://digital.gov/event/2022/02/24/language-connections-tips-to-create-maintain-and-present-non-english-digital-content/> 미국 일반 서비스국, *비영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지 관리 및 제공을 위한 10 가지*

팁 [10 Tips to Create, Maintain, and Present Non-English Digital Content] (English) (2022),

<https://digital.gov/2022/05/23/10-tips-to-create-maintain-and-present-non-english-digital-content-a-qa-with-michael-mule/>; 미국 일반 서비스국, *다국어 웹사이트를 위한 10 대 모범 사례*(2022),

<https://digital.gov/resources/top-10-best-practices-for-multilingual-websites/>.

⁵⁶ 2010 년 평이한 글쓰기 법(5 U.S.C. § 105)에 따라 정부 기관은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https://www.plainlanguage.gov> 에서 일반 언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법무부 내 법무 관리 부서에서는 일반 언어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내부 및 대민 문서에서 일반 언어 사용을 강화하고, 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를 확보하며, 성과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⁵⁷ 동영상 교육 시리즈인 *제한적 영어 능력 소유자에게 의미 있는 접근 제공* 및 기타 교육 동영상은 <https://www.lep.gov/video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⁵⁸ 예를 들어, 매일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와 상호작용하고 언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책임이 있는 구성요소 직원과 그러한 직원의 관리자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도구 및 자료는 구성원에서 개발하여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를 접할 수 있지만 정기적인 업무의 일부로 언어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게 기본적인 언어 접근 요구 사항,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⁵⁹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 부서, *채용 전 -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언어는 무엇인가?"* [Before You Hire – Ask Yourself: “What are my Project’s Language Needs?”] (English), https://www.lep.gov/sites/lep/files/media/document/2020-03/TIPS_Before_You_Hire.pdf. 또한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과, *효과적인 직원 언어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팁*, https://www.lep.gov/sites/lep/files/media/document/2020-03/TIPS_Effective_Language_Program.pdf 참조.

⁶⁰ 검증된 언어 시험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기를 평가하는 언어 시험은 응시자의 언어 구사 능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는 응시자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수험자는 시험 결과와 관련된 언어로 특정 말하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스테, 클라우디아, 언어학 교육, *언어 시험의 타당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 [New views of validity in language testing], ISSN 2280-6792

(2012),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8782753> *New views of validity in language testing* 참조. 또한 미국 법무부, 민권국, 연방 조정 및 규정 준수과, *공인 언어학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Does It Mean to be a Certified Linguist?]* (English),

https://www.lep.gov/sites/lep/files/media/document/2020-03/TIPS_Trust_Me_Im_Certified.pdf 참조.

⁶¹ 이러한 데이터에는 비영어권 웹페이지에 접근한 횟수, 공개 행사 또는 이해관계자 세션에 참여한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 및/또는 청각장애인/난청인들 참가자 수, 해당 행사가 다국어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 상호작용 횟수,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제공되지 않은 상호작용 횟수, 공식 또는 비공식 규정 준수 제도 또는 기타 의사소통 형태를 통해 받은 긍정 또는 부정 피드백 등 다양한 지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⁶² 이는 a) 가장 많이 요청된 언어(수화 포함), b) 특정 구성요소 웹페이지에서의 클릭을 포함하여 언어 접근이 필요하거나 요청된 상호작용 지점, c) 각 언어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d) 사용할 수 없었던 서비스 유형 및 거부된 언어를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 거부에 대한 설명을 추적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소는 언어 지원 서비스 거부에 대한 설명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1)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구성요소가 의미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2)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해. 예를 들어, 구성요소에 전화 통역 서비스가 있지만 계약된 공급업체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언어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구성요소들은 해당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해당 요청을 충족할 수 없음을 문서화하고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서화합니다. 기관은 모든 직원이 이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적 영어능력, 사용 언어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에 선호하는 언어에 대한 필수 데이터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구성요소들은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언어 접근성 자가 평가 도구 \[DOJ Language Access Self-Assessment Tool\] \(English\)](#)를 참조하세요.

⁶³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역사 레지스트리, *공인 청각 장애 통역사 사용 [Use of a Certified Deaf Interpreter]* (1997), <https://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2011SRL4aDeaf.pdf>.

⁶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남부 캘리포니아 통역사 등록소, *청각 장애 통역사 FAQ [Deaf Interpreter FAQs]* (English), <https://www.scrd.org/deaf-interpreter-FAQs>.

⁶⁵ 미국 법무부, 민권 부서, *ADA 요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ADA Requirements: Effective Communication]* (English), <https://www.ada.gov/resources/effective-communication/>.

⁶⁶ 연방 정부를 통한 인종적 형평성 증진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2021년 1월 20일), *상기 주 3*.

⁶⁷ 여러 법률 기관에서는 "제한된 영어 능력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언어 접근성 관련 문헌에서는 "비영어권 언어를 선호하는 개인"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과 같은 용어를 권장합니다. Ortega, P., Shin, T.M. & Martínez, G.A. *모두를 위한 언어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된 영어 능력"이라는 용어 재고 [Rethinking the Term "Limited English Proficiency" to Improve Language-Appropriate Healthcare for All] (English), J Immigrant Minority Health 24, 799-805 (2022), <https://doi.org/10.1007/s10903-021-01257-w> 참조.

⁶⁸ 이 계획의 목적상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정의는 1973년 재활법 504조를 시행하는 규정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동일합니다. "[연방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은] 간단히 말해서 연방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적용되는 연방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는 지속적인 기관 운영의 일환으로 대중과 접촉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수혜자 및 참가자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활동에는 대중과의 소통(전화 연락, 사무실 방문 또는 면담) 및 대중의 법무부 시설(카페테리아, 도서관) 이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범주의 활동에는 연방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민 활동, 연방 교도소 시스템 운영)이 포함됩니다."

⁶⁹ 번역: 연방 기관 번역 태그 라인, 위주 40.

⁷⁰ 미국 번역가 협회, *번역사 대 통역사: 차이점은 무엇인가?* [Translator vs. Interpreter: What's the difference?] (English), <https://www.atanet.org/client-assistance/translator-vs-interpreter/>.

⁷¹ 증오 범죄 및 증오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개선에 관한 법무부 직원을 위한 각서, 위 참고 20.

⁷² 민권 부서의 연방 규정 준수 섹션(CRT-FCS)은 행정명령 13166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조정을 담당하며, 행정명령 12250은 출신국 차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제 6편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CRT-FCS에 부여합니다.

⁷³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번역된 문서의 내부 저장소,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된 일반적인 법률 용어의 부서 전체 번역 용어집, 부서 구성원이 사용할 표준 언어 접근 공지, 전단지 및 포스터, 구성원이 제한적 영어능력 소유자 지역사회를 위해 번역된 콘텐츠를 게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템플릿 웹 페이지 또는 웹 표준, 번역할 문서 식별 및 번역 대상 언어에 대한 지침, 부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웹 페이지를 스페인어 및 적절한 경우 추가 일반 언어로 번역한 것 등이 포함됩니다.

⁷⁴ 행정명령 13166에 따른 언어 접근 의무에 관한 부서 구성원 책임자들에 대한 각서, 위/18.

⁷⁵ 권한 섹션을 참조하세요.

⁷⁶ *Id.*

⁷⁷ ADA 요건: 효과적인 의사소통, 위/참고 65.